

# 先秦時代의 婚姻風俗 變遷考\*

金基喆\*\*

## <목 차>

1. 緒論
  - 1) 婚姻의 原始的 意味
  - 2) 先秦時代의 時間的 範圍
2. 本論
  - 1) 殷商以前의 婚姻
  - 2) 殷商時代의 婚姻
  - 3) 周代의 婚姻
3. 結論

## 1. 緒論

본 논문은 《詩經》시대를 포괄하는 先秦시대의 혼인풍속변화에 연구초점을 맞추고 있다. 夏, 殷, 周를 거치면서 혼인풍속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면서 또 이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현재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 사회에 남아있는 혼인문화 현상을 참고하려고 한다. 고대의 문헌연구와 현대의 실상연구를 병행하여 선진시대의 혼인풍속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를 근거로 《詩經》의 혼인풍속의 면면을 엿볼 수 있는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漢陽大學校 國際文化大 中國學科 教授

## 1) 婚姻의 原始的 意味

婚姻은 우리 인류의 주요한 사회활동 중 하나다. 그리고 그 형식은 고대의 원시적 형식에서 기원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혼인의 형식을 통해서 혼인풍속이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알 수 있다.

《呂氏春秋》의 기록을 보면, “과거 태고시대에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군집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누가 자기 어미인지는 알지만, 누가 자기 아버지인지는 알지 못했다. 친척과 형제, 부부, 남녀등의 구별이 없고 장유존비의 분별 역시 없었다.”<sup>1)</sup>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묘사된 원시사회는 전형적인 모계 씨족사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을 여자들이 주도하게 되고 세대의 계승 역시 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대신화중의 여러 탄생설화들을 보면 부친은 없고 하늘의 감응으로 아이가 잉태되는 경우가 많다.

‘婚姻’이라는 어휘가 내포하는 원시적 의미는 무엇인가? 문헌이 부족한 先史시대의 상황을 지금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漢字의 형태를 통해서 혼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婚’이라는 글자에 대해 《說文》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婚은 新婦의 집이다. 《禮記》에 신부는 저녁에 맞이한다. 여자는 陰이다. 그러므로 婚이라 부른다. 女와 昏에 속하고, 昏은 의부 겸 성부이다.<sup>2)</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婚’은 ‘女’와 ‘昏’의 會意이다. 이 글자가 왜 ‘저녁(昏)’의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許慎은 《禮記》의 한 대목인 “娶婦以昏時”를 근거로 삼았다. 한편 ‘昏’에 대한 《說文》의 기록을 보면, “昏은 해가 진후의 어두컴컴한 것

1) 呂不韋, 《呂氏春秋》卷20恃君覽, 《四庫全書·子部·雜家類》, 北京,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以下四庫同): 昔太古嘗無君矣, 其民聚生羣處, 知母不知父, 無親戚兄弟夫妻男女之別, 無上下長幼之道。

2) 《說文解字》, 12篇下, 臺灣, 藝文印書館, 1982(以下說文同): 婚, 婦家也。禮, 娶婦以昏時。婦人陰也, 故曰婚。從女昏, 昏亦聲。

이다.”(昏, 日冥也.)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禮記》에서의 기록과 같이 어두운 저녁에서야 신부를 맞이하는 이유는 물론 과거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약탈혼의 풍속과 관련이 있다. 상대측의 저항을 피하고 또 사후 도주를 쉽게 하기위해서는 일몰 후의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적당하다. 약탈혼에 관한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周易》의 기록에서도 ‘匪寇, 婚媾’등의 爻辭가 보인다.<sup>3)</sup> 그 내용은 이미 형식만 남은 약탈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약탈풍습이 잔존한다. 즉 중국의 일부 소수민족들은 밤에 신부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결혼식 과정 중에, 밤에 신부를 납치하는 동작을 흉내 내고 있다. 이런 풍습은 상고시대의 약탈혼의 풍습이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혼인풍속과 관련이 있는 글자인 ‘娶’는 약탈혼의 의미를 더욱 잘 설명해주고 있다. 《說文》에 “娶는 신부를 얻는 것이다. 女部에 取聲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娶는 女와 取를 합친 形聲이면서 또 會意이다. 또 과거에 기록된 경전의 문장에서는 지금 사용되는 의미의 ‘娶’를 ‘取’로 적고 있으므로 ‘取’와 ‘娶’는 한 쌍의 古今字인 것이다. 즉 ‘取’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sup>4)</sup> 다시 《說文》의 ‘取’를 보면, “取는 포획하여 얻는 것이다. ‘又’와 ‘耳’의 會意字. 周禮에 이르길, ‘포획한 자에게서 좌측 귀를 취한다.’”<sup>5)</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손으로 귀를 자른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取’이다. 무력으로 상대를 포획한다는 의미에서 여자를 강제로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 것 역시 같은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sup>6)</sup>

## 2) 先秦時代의 時間的 範疇

先秦시대의 혼인풍속은 秦代 이전 즉 周代와 그 이전의 商代 그리고 다시 소금

3) 《周易》 屯卦六二와 賁卦六四에 각각 보인다.

4) 《說文解字》卷12下: 段玉裁는娶의 해석에서 “取彼之女爲我之婦也, 經典多取爲娶.”로 부연했고, ‘從女取聲’에서는 “說形聲包會意也, 此從小徐本.”라고 하여 取의 적극적인 의미를 확인했다.

5) 《說文解字》卷12下: 取, 捕取也, 從又從耳. 周禮: ‘獲者取左耳.’

6) 혼인의 원시적 의미와 한자와의 관계는 張弛, 〈中國古代文化與漢字形成之管窺〉, 北京, 《寶鷄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總18卷第4期, 1998, 52-53쪽의 내용을 참조

해서 夏代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심지어 先史시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父系사회로 넘어가는 '從夫居(妻가 남편을 따라 가서 동거)를 하나의 획으로 삼아 '從夫居가 정착되는 殷商시대를 先秦의 중간 시대로 삼았다.<sup>7)</sup> 그리고 그 殷商이전과 殷商이후(周代)를 각각 또 다른 시대로 분류했다. 즉 殷商이전, 殷商시대, 殷商이후(周代)의 총 3단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시대별로 전개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설명한다.

## 2. 本論

혼인풍속의 변화과정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 先秦시대는 과거 先史시대부터 周代까지 장구한 세월이다. 그간에 이루어진 시간적 공간적 혼인풍속의 변화를 명확하게 경계 짓기 역시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혼인변천은 群婚, 血族婚, 亞血族婚, 對偶婚, 一夫一妻의 맥락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일반적인 혼인변천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뚜렷한 경계를 찾으려면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혼인풍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부계사회의 성격이 보여 지는가? 그것은 바로 搶婚, 즉 약탈혼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龔熙文은 약탈혼의 등장은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sup>8)</sup> 즉 혼인제도가 씨족내의 혼

7) '從夫居'는 夫家에서 동거하는 혼인이다. 여자가 남편의 씨족부락으로 들어가 거주하는 것으로서 부계사회에 유행하는 거주형식이다. 이 '從夫居'는 對偶婚의 후기에 등장하는 혼인형식이다. 對偶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되고, 生父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부계사회로 되면서, 夫가 妻를 따라가 동거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妻가 夫를 따라 와 동거하는 '從夫居'로 바뀌었다. 여자들은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이제는 부계의 질서에 맞춰 사람과 재산이 승계되었다. 이것이 바로 一夫一妻制의 前奏이고 對偶婚이 一夫一妻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8) 龔熙文, 〈先秦歌謠婚俗沈澱之管窺〉, 河南, 《洛陽大學學報》第15卷第3期, 2000, 48쪽의 문장을 참조하여 약탈혼 등장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搶婚習俗의 出現, 反映了婚姻制度由族內婚向族外婚的改變, 即由不分血緣關係的原始群婚狀態, 向異姓氏族相互婚配階段的邁進, 是母系社會制度衰落和父系社會制度確立的重要標識, 它的出現, 結束了氏族中女子只是公有的妻子, 不能為某個人所獨有的歷史, 使婚姻向個體化邁進了重要一步.)

인에서 씨족외의 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연하면 혈연관계를 따지지 않는 원시적 群婚상태에서 異姓씨족간의 혼인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母系사회제도가 쇠락하고 父系사회제도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약탈혼의 출현으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간의 씨족중의 여자는 한 남자가 독점할 수 없고 여러 남자가 공유하는 ‘아내’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불식되고, 혼인이 이제는 개인화, 독점화 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先秦시대의 혼인풍속의 분기에 대해서, 蘇水, 魏林共은 《中國婚姻史》에서 혼인형태, 혼인방식 그리고 혼인구조의 발생과 발전에 근거해서 先秦시대를 3단계로 분류했다.<sup>9)</sup>

- 제1단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이라고 볼 수 있고 혼인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이다.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이러한 형태가 출현했다.
- 제2단계는 남자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취하여 일부일처를 이루는 특정한 방식이 출현한 단계이다. 殷商前期에 이러한 형태의 혼인방식이 출현했다.
- 제3단계는 고대의 혼례가 출현한 시기이다. 西周시대에 초보적인 형태의 혼례가 형성되었다.

### 1) 殷商以前의 婚姻

고대사회의 혼인유형은 처음에 群婚이라는 형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류의 초기생활방식에서 군집생활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다. 이러한 군집생활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인형태가 바로 군혼이었다. 이것은 최초의 혼인형태이며 원시적인 단계이다. 군혼은 또 다시 몇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史風儀의 《中國婚姻與家庭》에 의하면 “군혼시대는 혈연혼, 아혈연혼, 대우혼의 3단계로 분단한다”<sup>10)</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血緣婚, 亞血緣婚은 각각 血族婚과 亞血族婚

9) 蘇水, 魏林共著, 《中國婚姻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4, 13쪽의 문장을 참조하여 선진시대의 혼인을 3단계 유형으로 보았다. (遠古到戰國, 華夏民族的婚姻形態, 方式, 結構的發生發展大體經歷了三個階段. 一是通常意義的婚姻由無到有, 至遲在新石器時代末期由較固定的婚姻關係出現. 二是婚娶婚姻的特定方式至遲在殷商前期出現. 三是古代婚禮至遲在西周初步形成.)

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다시 血族婚(血緣婚)은 血族內婚, 줄여서 族內婚으로도 불리고, 亞血緣婚(亞血族婚)은 血族外婚, 줄여서 族外婚으로도 불린다. 그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血族婚(血緣婚, 血族內婚, 族內婚), 亞血族婚(亞血緣婚, 血族外婚, 族外婚), 對偶婚의 단계가 된다. 殷商이전시대의 혼인은 바로 對偶婚까지의 혼인형태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근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우혼에 이르러서는 이미 일부일처제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성격이 짙다.<sup>11)</sup>

### (1) 血族婚

혈족혼이란 동일한 혈족내의 형제자매지간이 혼인하는 것이다. 전설속의 伏羲(복희)와 女媧(여왜)가 그 일례다. 혈족내 형제자매간의 결혼은 오래된 풍속이며 훗날 周代에도 일부 지역과 계층에 잔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詩經시대는 이미 사회구조가 씨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들어갔고 혈족혼은 기본적으로 와해되었지만 비교적 토속문화가 강한 일부 국가의 귀족들에게는 同父異母지간의 혼인풍속이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詩經》의 기록을 보면 그 흔적을 알 수 있다. 齊風의 〈南山〉, 〈敝笱〉, 〈載驅〉 등 몇 편의 내용에서 당시 특수한 혼인풍속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sup>12)</sup> 齊襄公과 그의 배다른 여동생인 魯桓公의 부인 文姜간의 외도가 그것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 오누이는 당연히 음란한 인물로 폄하될 것이다. 하지만 齊國의 오래된 혼인풍속을 이해한다면 이 오누이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어쨌든 《詩經》 각 편의 주제를 서술했다는 詩序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일률적인 비판임을 알 수 있다.

10) 史風儀, 《中國婚姻與家庭》,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7, 66쪽 참조: “群婚時代分爲血緣婚, 亞血緣婚, 對偶婚三個不同階段.”

11) 劉皓, 《堯舜時代的婚姻考》, 北京, 《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21卷第2期, 2005, 40쪽: 原始社會大致經過原始群婚, 血族婚, 亞血族婚, 對偶婚和一夫一妻制幾個婚姻階段。(원시사회는 대체로 원시군혼에서 시작하여 혈족혼, 아혈족혼, 대우혼 그리고 일부일처제까지 몇 가지 혼인단계를 거친다.)

12) 〈南山〉, 刺襄公也。烏獸之行, 淫乎其妹。〈載驅〉, 齊人刺襄公也。無禮義, 故盛其車服, 疾驅於通道大都, 與文姜淫, 播其惡於萬民焉。〈敝笱〉, 刺文姜也。齊人惡魯桓公微弱, 不能防閑文姜, 使至淫亂, 爲二國患焉。(해석생략)

齊國은 과거 東夷族의 땅이었다. 즉 中原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동이족일 뿐만 아니라 齊國의 始祖인 姜尙 역시 동이족출신이었다. 司馬遷의 기록에 의하면, “東夷족의 풍속에 따라 예절을 간소화하고 상공업을 장려하고 어업과 염업으로 소득을 올리게 하자 많은 백성들이 齊國으로 귀의했다.”<sup>13)</sup>라고 했다. 齊國의 여성들은 노동을 하도록 배려했고 직조와 같은 수공업에 종사하여 자립심을 배우게 된다. 《管子》의 기록을 보면, “여자는 누구나 칼, 추, 단침, 장침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비로소 여자가 된다”<sup>14)</sup>라고 하였으니, 그 당시 여자들의 필수품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다. 齊國의 性의식 또한 비교적 개방적이고 남녀간에 장애가 없었고 부부간의 정조관념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齊國의 귀족인 孟嘗君에 관한 일화<sup>15)</sup>를 보면 비록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당시 그 사회의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다.

## (2) 亞血族婚

亞血族婚은 모계사회가 그 특징이고 이와 관련된 고대문헌의 기록은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民知其母, 不知其父.<sup>16)</sup>(백성들이 자신의 모친은 알지만 부친은 모른다.)  
 天地設而民生之, 當此之時也, 民知其母而不知其父.<sup>17)</sup>(천지가 자리하고 백성이 생겨나니, 이때 (후략))

13) 司馬遷, 《史記》卷32齊太公世家2, 《四庫全書》: 因其俗, 簡其禮, 通商工之業, 便魚鹽之利, 而人民多歸齊.

14) 管仲, 《管子》卷24輕重乙81, 《四庫全書》: 一女必有一刀, 一錐, 一箴, 一鍼, 然後成爲女.

15) 《戰國策》卷10齊3, 《四庫全書》: 孟嘗君舍人有與君之夫人相愛者, 或以問孟嘗君曰, 爲君舍人而內與夫人相愛, 亦甚不義矣. 君其殺之. 君曰, 瞻貌而相悅者, 人之情也, 其錯之, 勿言也. (맹상군의 신하중에 맹상군 부인과 정을 통한 자가 있었다. 누군가가 맹상군에게 묻길, 군의 신하이면서 집안에서는 군의 부인과 서로 통정을 하다니 참으로 부정한 자입니다. 군은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답하길, 외모를 보고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없었던 걸로 하고 발설치 마시오.)

16) 莊子, 《莊子》卷9盜跖, 《四庫全書》

17) 孫軼, 《商君書》卷2開塞, 《四庫全書》

其民聚生羣處,知母不知父,無親戚兄弟夫妻男女之別,無上下長幼之道.<sup>18)</sup>(백성들이 군집생활하니 모친은 알되 부친은 모르고, 친척, 형제, 부부, 남녀의 분별이 없고 상하장유의 도리가 없다.)

古之時未有三綱六紀,民人但知其母,不知其父.<sup>19)</sup>(고대에는 삼강육기의 규율이 아직 없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모친은 알되 부친은 몰랐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感天而生”과 같은 신화가 존재한다. 《說文》의 ‘姓’을 보면, “옛날 신성한 모친들은 하늘과 교감하여 자식을 낳기 때문에 하늘의 자식이라 호칭하는 것이다.”<sup>20)</sup>라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고대 신화 중에서 五帝와 관련된 출생에 관한 고사는 특히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큰 족적이 우뢰 못에서부터 나왔다. 화서가 그것을 밟고 나서 宓犧(복희)를 낳았다. 커다란 번개 불이 북두성을 휘감고 첫 번째 별인 천추성이 온 들을 비추자 附寶에게 감응이 생겨 黃帝를 낳았다. 보석 같은 빛이 마치 무지개처럼 달을 꿰뚫고 환해지자 여추에게 감응이 와서 顓頊(전욱)을 낳았다. 경도는 붉은 용과 결합하여 적제인 이기 요를 낳았다. 악등은 커다란 무지개를 보고 감응을 얻어 순을 요허에서 낳았다... 현조가 물위를 나르다가 알을 떨어뜨려 물에 떠내려가자 아간적이 그 알을 삼키고 나서 계를 낳았다.<sup>21)</sup>

혈족내부의 혼인에서 다시 혈족외부의 혼인으로 변천하는 배경은 경제적 안정에 있다. 모계사회의 중심인 여성이 주축이 되어 안정된 혈연집단을 이루면서 그간의 자급자족을 이루었으나 새로운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타 씨족과의 교류를 통해 연대를 이룰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통해 혈족 내 혼인은 건강한 후손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혈족내부의 결혼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외부의 다른 씨족과의 교류를 통해 우성의 후손을 얻게 된다.

18) 呂不韋,《呂氏春秋》卷20恃君覽,《四庫全書》

19) 班固,《白虎通義》卷上,《四庫全書》

20) 《說文解字》卷12下

21) 孫穀,《古微書》卷23,《四庫全書》: 大跡出雷澤,華胥履之,生宓犧. 大電光繞北斗,樞星照野,感附寶而生黃帝. 瑤光如晝,貫月,正白,感女樞,生顓頊. 慶都以赤龍合昏,生赤帝伊祁稷. 握登見大虹,意感而生舜於姚墟. 大禹之興,黑,風會紀. 玄鳥翔水,遺卵流,娥簡狄吞之,生契.



亞血族婚 조건하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남자는 妻가 살고 있는 집단으로 가서 혼인생활을 하되 일상생활은 자신의 어머니가 속한 집단의 친척들과 함께 한다. 설사 남자가 사망하더라도 부부는 함께 매장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출생한 씨족 내에 묻힌다. 또 씨족내 혼인을 불허하는 원칙 때문에 자신의 씨족내의 여자와도 혼인도 할 수 없고 나중에 죽은 후에도 자신의 자매들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

이러한 모계사회의 혈족외혼인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 龍生庭의 《婚俗趣話》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중국 海南島에 거주하는 黎族은 모계사회의 풍습과 혈족외혼인을 보여주는 특이한 혼인풍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放寮’라는 것이다. 이 의미는 청년남녀가 함께 ‘寮房’에 묵으면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寮房을 黎族 현지어로는 ‘뿌룽꾸이’(한어:布隆闈)라고 불리며 그 의미는 ‘부엌 없는 방’이다. 동네마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뿌룽꾸이’를 나무그늘이 있는 조용한 위치에 따로 지어놓는다. 남녀 나이 15,16세가 되면서부터 여기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 집에서 잠을 잔다면 못났다고 남들이 흉을 본다. 밤이 되면 남자들이 여러 명씩 다른 동네 ‘뿌룽꾸이’를 찾아가 그 동네 처녀들과 노래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타진한다. 서로 마음에 들면 남자가 작은 선물을 건네고 둘은 거기서 함께 잔다. 아무리 둘이 잠을 잤다하더라도 결혼의 의무는 없다. 또 부모들도 간섭하지 않는다.<sup>22)</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같은 지역의 남녀가 만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남녀는 안 된다는 금기는 지켜지고 있다.<sup>23)</sup> 이와 비슷한 풍속은 소수민족 지역에 많이 보인다. 즉 壯族의 ‘放公房’ 그리고 侗族의 ‘坐妹’ 등이 이와 흡사하다.

또 다른 모계사회의 전형적인 혈족외혼인 예는 중국 운남성과 사천성 경계인 瀘沽湖 주변에 거주하는 摩梭민족의 ‘走婚’이다. 《西南少數民族風俗志》에 기록된 주혼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2) 龍生庭, 《婚俗趣話》,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9, 220쪽 참조

23) 이수봉, 김창남공저, 《중국종족들의 혼속》, 서울, 경인문화사, 1997, 154쪽

“남녀양측에게 혼인이란 없다. 각자 자기 모친 집에 살고, 따로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지는 않는다. 결혼 안하고 혼자 살면서 가끔 자유롭게 만나는 생활을 한다. 보통 남자가 밤중에 여자 집에 찾아가 묵고 다음날 새벽에 서둘러 빠져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친과 생활한다. 이런 가끔씩 동거하는 관계를 ‘阿注’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친밀한 짝’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관계의 성립과 해체는 어떤 규정이나 방식이 없고 그저 양측이 동의하면 함께 하는 것이고, 만약 한쪽이 원하지 않거나 왕래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나게 된다.”<sup>24)</sup>

그들은 모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정의 모든 경제적, 정치적 권리는 모친이 쥐고 있다. ‘阿注’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모친은 확실히 인정하고 따르지만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친의 남자 중에서 과연 누가 아이의 친생부친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곳의 남녀들은 서로의 교제에 있어서 어떤 신분이나 경제적 배경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로지 쌍방간의 의사로 결정된다. 다만 한 가지 금기로 삼는 것은 모계혈연의 근친 간에는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다른 형제자매나 고종사촌간의 교제는 가능하다. 심지어 외숙모와 조카, 삼촌과 조카딸간의 교제도 모계혈연만 아니라면 비난을 받지 않는다.<sup>25)</sup>

### (3) 對偶婚

對偶婚의 의미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對偶婚이란 한 쌍의 남녀가 장시간 혹은 단 시간 내에 비교적 안정되게 동거를 하지만 또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개별혼을 말한다. 부부사이의 관계는 이미 군혼시기의 단순한 성생활관계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의 주된 아내이면서 반려자이고 또 음식을 장만하는 주부가 된다. 남자 역시 여자 측 집안일을 돕고 함께 소비하며 자녀를 부양한다.”<sup>26)</sup>

24) 王增永李仲祥共著,〈什么叫對偶婚〉,《婚喪禮俗面面觀》,濟南,齊魯書社,2001,5쪽에서 재인용.

25) 龍生庭,《婚俗趣話》,北京,光明日報出版社,1989,252쪽참조

26) 張樹棟李秀領共著,《中國婚嫁家庭的嬗變》,臺灣,南天書局,1996,23쪽: 對偶婚是一對男女在或長或短的時間內比較固定的偶居,但可以輕易離異的個體婚,夫妻關係已經不是群婚時單純的性生活關係,婦女不

생산력의 증가로 남자들의 노동력이 인정을 받고 남자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여자를 독점하려는 의식이 생기게 마련이다. 상대와 더욱 긴밀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곧 對偶婚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對偶婚은 군혼에서 일부일처제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이다. 이것은 개별 走婚시기나 혹은 비교적 고정적인 개별 走婚시기에 이루어진다.”<sup>27)</sup>라고 했듯이, 위에서 예로 든 중국 사천성 모소족의 走婚에서도 남녀 ‘阿注’가 차츰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동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단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여자 혼자서 자식을 부양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짓기는 어려우므로 자연히 남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up>28)</sup>

## 2) 殷商時代의 婚姻: 一夫一妻制와 一夫多妻制

蘇水, 魏林共의 《中國婚姻史》의 내용에 의하면, 殷商시대 혼인의 특징은 父權制와 남존여비로 대표될 수 있다. 즉 夏나라의 父權制를 계승했고 나아가 남존여비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혼인내부의 양성관계는 사회전반의 양성관계의 축소판이다. 남편이 귀하고 부인이 천하게 여겨지는 것은 남존여비사상 때문이다. 男權이 날로 신장하면서 兩性관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여성의 지위는 점차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 추세가 은상시대에서 더욱 뚜렷해졌다.”<sup>29)</sup> (婚姻內部的兩性關係是整個社會的兩性關係的縮影, 夫妻關係是社會制度的寫照, 夫尊妻卑的文化背景是男尊女卑和重男輕女. 在男權日漸昌盛之時, 兩性關係日趨不平等, 女性地位逐步下落. 這種變化趨勢殷商時期已比較明顯.)

僅是其丈夫的主妻, 她也是他的伴侶, 是爲他安排伙食的主婦, 男子也已經參加了女方氏族的生產活動, 一起消費, 扶養子女.

27) 注27), 24쪽: 對偶婚是群婚向一妻一夫制過渡的中間環節, 它發生在個別走婚時期, 或者說是較爲固定的個別走婚.

28) 이수봉, 김창남공저, 《중국종족들의 혼속》, 서울, 경인문화사, 1997, 43쪽 참조. 그 부분을 요약하면, “대우혼은 곧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인 것이다. 이 변화의 결정적 원인은 경제문제이다.”

29) 蘇水, 魏林共著, 《中國婚姻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4, 44쪽

父權制 실험의 상징적인 사건은 이미 夏나라 禹王의 아들인 啓가 禪讓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그 이전은 모계사회의 구습 때문에 자신의 친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서 할 수없이 禪讓이라는 방식으로 후계자를 정했지만 이제는 부친의 권위가 생겼기에 아들인 자신이 왕위를 승계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sup>30)</sup>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배경은 사유재산, 父子계승, 남성중심이다.

부계사회에서는 후계의 존재여부가 중차대한 사안이다. 오로지 아들만이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니 重男사상은 당연한 것이다. 詩經에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보인다. 아들이나 딸을 출산하고 양육했을 때 각각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父權이 팽배해짐에 따라 일부일처제는 확립되었다. 하지만 과연 殷商시대에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다처제도 공존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先王들이 한명 이상의 법정 배우자를 얻었지만 이 사실만을 가지고 殷商시대의 일부일처제를 否定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은상시대는 일부일처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sup>32)</sup>와 같은 원칙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일부일처제이지만 실제로는 다처제”<sup>33)</sup>, “일부일처 겸 일부다처”<sup>34)</sup>, “일부다처를 겸행”<sup>35)</sup> 등으로 현실을 인정한 견해도 있다.

실제로 甲骨文의 卜辭는 완벽한 자료가 아니고 모든 殷商시대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자료로 전체 殷商시대를 고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마다 통

30) 魏哲銘, 李敏共著, 《論堯舜禹的婚姻與父權制的確立》, 西安,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4卷第2期, 2004, 101쪽: 堯舜禹時期的禪讓實際就是一種氏族選舉制度, 那時社會本已轉變為父系, 而以前母系氏族傳統的禪讓習慣還在繼續, 直到啓時才正式廢止.

31) 裴普賢은 후대 수천 년간 남녀 각각에 대한 대우와 기대의 차이는 이 시기에 이미 정착되었다고 보았다. 《詩經欣賞與研究》卷3, 臺灣, 三民書局, 1987, 908쪽: (此)分別說明對生男生女不同的待遇, 以及不同的期望, 此後數千年中國人中男輕女的觀念及對男女不同的期望也就植基於此了.

32) 李亞農, 《殷代社會生活》,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5, 15쪽20쪽참조: 少數先王縱然有了一個或一個以上的法定配偶, 并不能以此而否定殷代所實行的一夫一妻制. 我們必須承認殷代實行的婚姻制度是一夫一妻制.

33) 范文瀾, 《中國通史》, 北京, 人民出版社, 1978, 57쪽: 商王婚姻是一夫一妻制, 實際是多妻制.

34) 胡厚宣, 《殷代婚姻家族宗法生育制度考》, 《民國叢書》第1編82冊, 上海, 商務印書館, 1936, 3쪽28쪽참조: 殷王乃行一夫一妻兼一夫多妻. 殷代之婚姻制度, 在上甲以後大戊以前爲一夫一妻; 自中丁之後以迄帝辛爲一夫多妻.

35) 蘇水, 魏林共著, 《中國婚姻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4, 38쪽: 殷商王室兼行一夫多妻制.

계수치가 다르다.<sup>36)</sup>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명이상의 배우자를 가진, 즉 多妻를 가진 왕의 숫자가 적지 않다. 게다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감안하면 은상시대에 일부다처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

혹자는 말하길 商王중의 多妻로 간주되는 부인들은 동시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왕이 喪妻할 때마다 차례로 들인 왕후라는 것이다.<sup>37)</sup>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卜辭에 보이는 다수의 諸王들이 일부일처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실제로 一妻뿐이었던지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 반증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왕과 나란히 特祭를 누릴 수 있는 여인은 왕이 거느린 모든 妻들이 아니라 오로지 등극한 자의 생모만 가능했다”<sup>38)</sup>라는 사실 때문이다. 즉 당연히 여러 妻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여러 학설들에 의하면 宗法제도는 周代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殷商말기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즉 嫡庶의 규율이 생겨난 것이다. 이를 통해 판단하건

36) 참고할만한 두 가지 의견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李學勤, 《論殷代親族制度》, 北京, 《文史哲》11期, 1957 참조: 殷王系自王亥至武庚35王, 有配偶可考者23王. (중략) 則在19王中, 二配者四王(中丁, 祖乙, 羌甲, 祖辛), 三配者二王(祖丁, 武丁) (殷商은 王亥부터 武庚까지 모두 35명의 왕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왕은 23명이 된다. 그중 王亥 1인과 그리고 日名을 고증할 수 없어 배우자 숫자를 알 길이 없는 3명의 왕을 제외하고 나면 19왕이 남는데 그중 2배우자는 4명, 3배우자는 2명이다.) 결과적으로 1배우자는 13명이 된다. 蘇永, 魏林共著, 《中國婚姻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4, 38쪽 참조: 원문생략. 2배우자 5명(中丁, 祖乙, 祖辛, 祖甲, 康丁), 5배우자 2명(祖丁, 武丁), 8배우자 1명(小乙)

37) 樊靜, 《中國婚姻的歷史與現狀》,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0, 19쪽: 就拿甲骨文關於商代國王的記錄來看, 三十幾個帝王中, 多數是一人一配, 如成湯王配妣丙, 太甲王配妣辛. 他門也有二配, 三配乃至四配的, 武丁就有三配, 其原因不外是: 原配早死, 又娶繼室; 王后被廢, 又立新后. 武丁便是這種情況, 一人早死, 一人被廢, 因而沒有改變事情的本質, 仍然體現了一夫一妻制. (갑골문중 商代의 국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30여명의 제왕 중 다수가 일부일처이다. 예를 들어 성탕왕의 배우는 비병이고, 태갑왕의 배우는 비신이다. 그들 중에 2명, 3명의 배우도 있고 4명까지도 있는데, 무정의 경우 바로 3명의 배우가 있다.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원배우가 조기에 죽으면 다시 계실을 얻으니, 왕후가 폐해지고 다시 새 왕후를 앉히는 것이다. 무정이 바로 이런 경우이니, 하나는 일찍 죽고, 하나는 폐해진 것이다.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여전히 일부일처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38) 陳筱芳, 《春秋以及中國古代的一夫多妻制》, 四川, 《西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總20卷第2期, 1999, 158쪽: 僅有一妻可考者也并不意味着他門僅一妻, 因為能與他門同享特祭的只是那些繼王的生母而不是所有的妻. (단 한명의 처만 고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처를 한명만 두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과 함께 특제를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왕위를 승계한 자의 생모뿐이고 모든 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 殷商대에 이미 일부일처 혼인제도가 확립되었고,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일부일처의 원칙 하에 妻妾嬪妃의 구별을 두었다고 본다.<sup>39)</sup>

### 3) 周代の 婚姻: 婚禮의 規定

#### (1) 六禮의 定立

周代の 혼인풍속에서 중요한 특징은 혼례의 규정이다.<sup>40)</sup> 즉 先祖와 後孫을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확인한 것이다. 여기서 嫡庶가 구별되고 宗法이 국가기강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殷商시대가 一夫多妻의 시대라면 周代는 一夫一妻多妾의 시대이다. 그만큼 嫡과 庶의 구별이 엄격하고 嫡子承繼의 원칙이 바로 서기 때문에 국가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다.

周代는 국가제도가 확립된 朝代로 유명하다. 특히 개국 초기 文王의 아들인 姬旦, 즉 周公이 周代の 禮樂을 창제한 이후로 모든 사회제도가 점차 완비되었다.<sup>41)</sup> 그중에서도 혼례 등을 규정하여 혼인풍속을 제도화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儀禮·士昏禮》<sup>42)</sup>에 규정한 六禮의 상세한 정도를 보면 周代가 禮의 규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39) 顧燏塘, 顧鳴塘共著, 《中國歷代婚姻與家庭》, 臺灣, 商務印書館, 1994, 14-15쪽: 我們可以知道, 在商朝, 一夫一妻制的婚姻已經確立, 奴隸主貴族在一夫一妻制原則下, 已有了妻妾嬪妃的區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商代에 이미 일부일처제 혼인이 확립되었고, 노예주 귀족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원칙 하에 이미 처첩빈비의 구별이 존재했다.)

40) 《禮記》卷61昏義: 昏禮者將合二姓之好, 上以事宗廟, 而下以繼後世也, 故君子重之. (혼례란 두 姓의 좋은 것을 합치는 것이다. 위로는 종묘를 모시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를 중시한다.)

41) 《禮記》卷31明堂位: 周公相武王以伐紂, 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 六年朝諸侯於明堂, 制廟作樂, 頒度量, 而天下大服. (주공이 무왕을 도와 주왕을 정벌했고, 무왕 사후에 성왕이 유아한지라 주공이 천자의 직책을 대신 수행하며 천하를 통치한지 6년만에 제후를 명당에 불러들여, 禮와 樂을 제정하고 도량을 반포하니, 온 천하가 따르더라.)

42) 《儀禮》의 成書시기는 정설이 없다. 今古文問의 논쟁으로 그 저자는 周公, 孔子, 孔子後學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그 안에 기록된 六禮관련 내용을 볼때 적어도 周代에 시행되던 풍속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2) 六禮의 種類

《儀禮·士婚禮》에 나오는 六禮의 6단계 과정은 각각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이다.<sup>43)</sup>

① 納采

남자 측에서 중매인을 통해 서신과 예물을 여자 집으로 보내 결혼할 의사를 타진한다. 만약에 여자 측에서 그 혼인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그 예물을 받는다.

② 問名

여자 측에서 일단 예물을 받았으니 청혼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남자 측에서는 판단하여 좀더 진일보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즉 서둘러 다시 예물을 준비해서 중매인을 통해 여자 집으로 보내 아가씨의 성명, 연령, 사주팔자 등을 받아오도록 한다.

③ 納吉

사주팔자로 점을 친 결과 길조로 나왔으면 다시 예물을 달려 중매인을 여자 집으로 보내 이 결과를 통보한다. 이로써 결혼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④ 納徵

納徵은 納幣라고도 한다. 納吉을 통해 결혼이 기정사실이 되었기에, 남자 측에서는 제대로 구비한 결혼예물을 챙겨서 여자 집에 전달하면서 정식으로 결혼이 정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⑤ 請期

남자 측에서 중매인에게 간단한 예물을 여자 집으로 달려 보내 적당한 결혼

43) 納徵은 춘추시대에는 納幣라고 불렀고 후대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納徵의 徵은 成과 같은 의미로서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혼인이 정해졌음을 나타낸다. 納幣는 幣帛을 예물로 주면서 혼인을 완성하는 것이다. 《禮記》婚儀孔疏: "納徵者, 納聘財也. 徵, 成也. 先納聘財而後婚成." 참조 六禮내용은 필자, 〈詩經에 보이는 傳統婚禮와 韓中兩國 傳統婚禮問의 演變研究〉, 《중국학연구》 37집, 2006.20-21쪽 참조

날자를 잡도록 요청한다. 여기서 請이란 여자 측의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다.

### ⑥ 親迎

신랑이 결혼당일 직접 처가로 가서 혼례를 치룬 후 신부를 대동하여 시가로 데려와 신랑 집에서 시댁 부모님과 조상께 예를 올린다.

## (3) 經書에 보이는 六禮

### ① 《詩經》

《詩經》은 가장 오래된 민간가요집이다. 그리고 西周시대의 민간풍속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詩經에서 六禮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衛風·氓〉 편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六禮는 이미 일반 민중에게 보편화된 풍속임을 알 수 있다.<sup>44)</sup> 즉 納采, 問名, 納吉과 親迎까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親迎’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詩도 있다. 親迎을 직접 거론한 〈大雅·大明〉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sup>45)</sup>

### ② 《春秋》

《春秋》의 혼례관련 기록을 보더라도 적어도 周代에 이미 六禮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春秋의 기록에 六禮중 두 가지 절차가 나온다.<sup>46)</sup> 즉 納幣와 逆女(親迎)이다. 六禮이기에 6종의 의절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함에도 2종만 보이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후자의 견해로는 六禮중 納幣와 逆

44) 제1장: 氓之蚩蚩, 抱布貿絲. 匪來貿絲, 來即我謀. 送子涉淇, 至于頓丘. 匪我愆期, 子無良媒. 將子無怒, 秋以爲期. (저 남자 웃으면서, 옷감을 안고 와서 실로 바꾸네. 실 사러온게 아니라, 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지. 너를 배웅하러 기수를 건넜고, 돈구까지 갔었지. 내가 기일을 넘긴게 아니라, 네가 매파를 안 데려온거라네. 그대여 화내지 말고, 가을로 기약하자.)

45) “大邦有子, 偁天之妹. 文定厥祥, 親迎于渭.”(莘國의 여인이여, 마치 천상의 선녀 같구나. 예를 갖추 납폐하고 길조를 얻었으니, 이제 위수로 나가 그녀를 친영해야지.)

46) 여기서는 三傳에 있는 기록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春秋經에만 보이는 기록을 가지고 논한다.



女(親迎)가 대표적 의절이기 때문에 그 둘만 기록했다는 것이다.<sup>47)</sup>

#### (4) 六禮의 社會的 意義

周代에 六禮라는 혼례규정이 반포되면서 혼인은 더 이상 결혼당사자간의 행사가 아니고 한 집안의 家長과 또 다른 한 집안의 家長간의 권리이자 임무가 되어 버렸다. 철저한 부권사회로 진입한 이상 여자들의 인권은 박탈당했고 심지어 남자들의 인권도 그 집 家長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혼당사자인 남녀는 오로지 가장의 명령에 따라 배우자가 결정되었으며 매과의 언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sup>48)</sup> 서로 자신의 집안과 대등한 집안을 선택해서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 상층 귀족부터 하층 서민까지 국가가 세분화된 거대한 계급구조로 공고해질 수 있었다. 또 하나는 同姓간의 결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左傳》의 기록에도 ‘남녀가 동성이면, 그 자손이 번성하지 않는다’<sup>49)</sup>라고 하여 이미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었다.

### 3. 結論

혼인풍속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혼인풍속이 바뀌는 것이다. 殷商시대 이전에는 군혼의 형태이다. 씨족사회 내에서만 남녀결합이 이루어지는 혈족혼과 그리고 다른 씨족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혈족외혼등, 원시적인

47) 《春秋集傳纂例》卷2, 《四庫全書》: 趙子曰, 婚禮有六, 一納采, 二問名, 三納吉, 四納徵, 五請期, 六親迎. 春秋獨書其二, 以納幣方契成, 逆女爲事終, 舉重之義也. (조자왈, 혼례는 6개의 절차이다. 제1은 납채, 제2는 문명, 제3은 납길, 제4는 납징, 제5는 청기, 제6은 친영이다. 춘추에는 그중 2가지 절차만 기록되어 있는데, 납폐는 혼약이 이제서 성립되어서이고, 역녀(친영)는 일의 마지막이기에, 중요한 사항만 예로 든 것이다.)

48) 《孟子》6上滕文公下, 《十三經》: 父母之命, 媒妁之言.

49) 《左傳》僖公二十三年, 君其禮焉, 男女同姓, 其生不蕃.

군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후기에는 고정적인 배우자로 가기 전단계인 對偶婚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개별혼의 양상을 띠게 되고, 일부일처의 혼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殷商시대 왕위계승의 특징은 동생이 형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왕이 여러 명의 妻를 두었기 때문에 多産을 한 반면 그 자식들 간의 분쟁 역시 빈번하다.<sup>50)</sup> 즉 배다른 자식들 간의 위계질서가 쉽지 않다. 그래서 殷商말기 武乙왕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적통승계이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혼인습속의 개정이다.

周代는 殷商의 적자승계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기초 하에 一夫一妻制를 불변의 법칙으로 삼는 한편, 衆妾을 허용하는 대신에 妻와 妾의 신분차이를 명확히 한다. 周代 혼인풍속의 특징은 혼례의 완비다. 바로 《儀禮》에 기록된 六禮가 그것이다. 《詩經》과 《春秋》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이미 지배계층에 六禮의 시행이 보편화되고 민간에서도 그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胡厚宣, 殷代婚姻家族宗法生育制度考, 《民國叢書》第1編32冊, 上海, 商務印書館, 1936
- 李亞農, 《殷代社會生活》,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55
- 范文瀾, 《中國通史》, 北京, 人民出版社, 1978
- 裴普賢, 《詩經欣賞與研究》, 臺灣, 三民書局, 1987
- 史風儀, 《中國婚姻與家庭》,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1987
- 龍生庭, 《婚俗趣話》,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9
- 樊靜, 中國婚姻的歷史與現狀,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0
- 蘇冰, 魏林共著, 《中國婚姻史》, 臺灣, 文津出版社, 1994

50) 顧德瑋, 顧鳴塘共著, 《中國歷代婚姻與家庭》, 臺灣, 商務印書館, 1994, 25쪽 참조: 상왕조는 31명의 왕 중에서 14명이 형을 계승한 동생이었다. 상조후기에 왕이 본처이외에 여러 첩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생의 여러 왕자들간의 왕위쟁탈전이 간혹 발생했다. 武乙왕부터는父子계승 더 나아가 嫡長子계승을 엄격히 규정했다. (원문생략)

- 顧鑿塘,顧鳴塘共著,《中國歷代婚姻與家庭》,臺灣,商務印書館,1994
- 張樹棟,李秀領共著,《中國婚姻家庭的嬗變》,臺灣,南天書局,1996
- 王增永,李仲祥共著,《婚喪禮俗面面觀》,濟南,齊魯書社,2001
- 이수봉,김창남공저,《중국종족들의 혼속》,서울,경인문화사,1997
- 李學勤,論殷代親族制度,北京,《文史哲》11期,1957
- 張弛,中國古代文化與漢字形成之管窺,北京,《寶雞文理學院學報》18卷4期,1998
- 陳筱芳,春秋以及中國古代的一夫多妻制,四川,《西南民族學院學報》總20卷第2期,1999
- 龔熙文,先秦歌謠婚俗沈澱之管窺,河南,《洛陽大學學報》第15卷第3期,2000
- 左洪濤,論《詩經》時代的婚俗,北京,《西北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2卷3期,2002
- 李貴生,李天保共著,從《詩經》看先秦的婚禮制度,北京,《社科縱橫》第19卷5期,2004
- 魏哲銘,李敏共著,論堯舜禹的婚姻與父權制的確立,西安,《西北大學學報》第34卷第2期,2004
- 劉皓,堯舜時代的婚俗考,北京,《思茅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21卷第2期,2005
- 金基喆, 詩經傳統婚禮와 韓中兩國 傳統婚禮間的 演變研究,서울,《中國學研究》37집,2006

### 《中文提要》

#### 先秦時代婚姻風俗

自古婚姻風俗不斷演變,是隨着時代要求而應變的。在殷商以前,婚姻形態尚停滯於群婚階段。也就是氏族內部的血族婚以及與他族之間的通婚,再來後期出現的對偶婚等,此三者均未脫離原始群婚形態。所謂對偶婚,是配偶之間結合比較固定的,所以從此進展為個別婚形式,最終會發展成一夫一妻制形態,這是婚俗演變的一般情況。

殷商時期王位世襲,除了父子繼位之外也有兄終弟及的現象。在眾妾環境下,異母同生兄弟地位相等,王位不會給嫡子獨占,因此王子之間自然頻發鬪爭,導致政治不安。殷商晚期武乙王為了剔除上述隱患,實行嫡長子首先繼位的規定。此一規定,又是以眾妾之間嫡庶之分為前提。

周代繼承殷商嫡庶制度,在一夫一妻基礎下,盡管容許娶妾,但妻與妾之身分有明確規定。維護正妻身分,嚴禁眾妾僭位。周代婚姻風俗主要特點不外是具備婚姻儀式,《儀禮》所述六禮就是。從詩經、春秋有關記錄,可窺見當時在統治集團,六禮的實行已堂而皇之,至于

332 中國文化研究 第11輯

民間也普遍存在婚姻要據六禮的共識。

**關鍵詞**：婚姻，先秦，結婚，風俗，殷商，周代，六禮